

# 고성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

|      |     |
|------|-----|
| 의안번호 | 722 |
|------|-----|

제출년월일 : 2001. 11. 26

제출자 : 고성군수

## 1. 개정이유

건축법시행령이 개정(2001. 9. 15. 대통령령 제14,903호)됨에 따라 조례에 위반한 사항을 정하고, 현행 조례 규정상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.

## 2. 주요골자

- 가. 기존건축물의 대지가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또는 도로의 설치 등으로 법령 등에 부적합할 경우 건축할 수 있는 규정을 정함.(안 제5조)
- 나. 도시계획시설 예정지 안에서의 가설건축물중 주거환경 등에 악영향을 미치는 간이축사 등의 설치를 금지함.(안 제8조)
- 다. 도시계획구역 밖의 건폐율을 준농립지역 40퍼센트, 자연환경보전지역 40퍼센트, 기타지역 60퍼센트로 정함.(안 제21조)
- 라. 도시계획구역 밖의 용적률을 준도시지역 200퍼센트(개발계획미수립지역 80퍼센트), 준농립지역 80퍼센트, 자연환경보전지역 80퍼센트, 기타지역 200퍼센트로 정함.(안 제23조)
- 마. 공동주택의 일조권확보를 위한 띄어야 할 거리중 동일한 대지안의 측벽과 측벽간의 거리를 6미터에서 4미터로 완화함.(안 제29조)

## 3. 참고사항

- 근거법령 : 건축법 제5조의2(기존건축물등에 대한 특례), 제15조(가설건축물), 제47조(건축물의건폐율), 제48조(건축물의용적률), 제53조제4항(일조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)
- 입법예고 : 결과 의견내용 없음

## 4. 본문

- 붙임과 같음

## 고성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

고성군건축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

제5조중 “ 다음 각호의 범위안에서 건축할 수 있다”를 “영 제6조의2 제2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”로 하고 제1호 및 제2호를 삭제한다.

제8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2. 영 제15조제5항에 해당하는 가설건축물. 다만, 제10호를 제외 한다

제21조 중 제1호 내지 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1. 준농림지역 : 40퍼센트
2. 자연환경보전지역 : 40퍼센트
3. 제1호 및 제2호 외의 지역 또는 구역 : 60퍼센트

제23조 중 1호 내지 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1. 준도시지역 : 200퍼센트(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제13조제1항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80퍼센트)
2. 준농림지역 : 80퍼센트
3. 자연환경보전지역 : 80퍼센트
4. 제1호 내지 3호 외의 지역 또는 구역 : 200퍼센트

제29조 제2항 제2호 다목 중 “6미터”를 “4미터”로 한다.

### 부 칙

①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②(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 등에 관한 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 당시 이미 건축허가(신고)를 신청한 경우와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 신고를 하고 건축중인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. 다만,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 등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의한다.

## 신·구 조문대비표

| 현 행  | 개 정 안   |
|--|---|
| <p>제5조(기존건축물에 대한 특례) 법 제5조의 2 및 영 제6조의 2 규정에 의한 사유로 법령 및 이 조례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건축물 및 대지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법 위안에서 건축할 수 있다.</p> <p>1. 기존건축물의 개축<br/>2. 증축·개축하고자하는 부분이 법령 및 이 조례의 규정에 적합한 경우</p> | <p>제5조(기존 건축물에 대한 특례) ---<br/>---<br/>---<br/>---<br/>---<br/>---<br/>---<br/>영 제6조의 2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건축할 수 있다.<br/><u>〈삭제〉</u><br/><u>〈삭제〉</u></p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<p>제8조(가설건축물) (생략)<br/>1.(생략)<br/>2. 영 제15조제4항에 해당하는 가설 건축물</p>  | <p>제8조(가설건축물) (현행과 같음)<br/>1.(현행과 같음)<br/>2. 영 제15조제5항 각호에 해당하는 가설 건축물. 다만, 제10호를 제외한다.</p>   |
| <p>제21조(도시계획 구역밖의 건폐율) (생략)<br/>1. 농립지역 : 60%<br/>2. 준농립지역 : 40%<br/>3. 자연환경보전지역 : 60%<br/>4. 준도시지역 : 60%(다만, 다른 법률등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 그 규정에 의한다)</p>  | <p>제21조(도시계획 구역밖의 건폐율) (현행과 같음)<br/>1. 준농립지역 : 40퍼센트<br/>2. 자연환경보전지역 : 40퍼센트<br/>3. 제1호 및 제2호 외의 지역 또는 고역 : 60퍼센트</p>   |
| <p>제23조(도시계획구역 밖의 용적률) (생략)<br/>1. 농립지역 : 100%<br/>2. 준농립지역 : 100%<br/>3. 자연환경보전지역 : 100%(다만, 수산자원보전지구안에서는 200%로 한다)<br/>4. 준도시지역 : 200%(다만, 준도시지역내 각 지구에서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)</p>       | <p>제23조(도시계획구역 밖의 용적률) (현행과 같음)<br/>1. 준도시지역 : 200퍼센트(국토이용 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80퍼센트)<br/>2. 준농립지역 : 80퍼센트<br/>3. 자연환경보전지역 : 80퍼센트<br/>4. 제1호 내지 제3호 외의 지역 또는 고역 : 200퍼센트</p> |
| <p>제29조(일조권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)<br/>①~②(생략)<br/>1.(생략)<br/>2.(생략)<br/>가.(생략)<br/>나.(생략)<br/>다. 측벽과 측벽이 마주보는 경우에는 6미터 이상</p>  | <p>제29조(일조권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)<br/>①~②(현행과 같음)<br/>1.(현행과 같음)<br/>2.(현행과 같음)<br/>가.(현행과 같음)<br/>나.(현행과 같음)<br/>다. --- 4미터 ---</p>  |